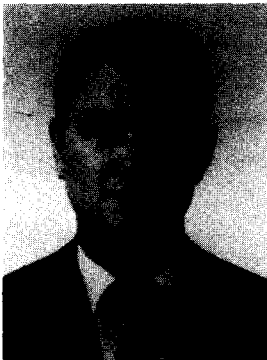


EC의 酒稅率 引下 要求와 한국의 酒稅政策



崔 光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目 次 ■

- I. 머리말
- II. EC의 요구
- III. 주세부과의 근거
- IV. 주류소비의 특성과 국민경제적 효과
- V. 주세의 세율수준 및 세율구조
- VI. 종량세 증가세 문제
- VII. 酒稅減免의 축소
- VIII. 酒類의 價格自律化
- IX.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EC는 우리나라의 주세정책에 관해 회원국의 이익을 감추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앞세워 압력아닌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EC와의 협상이나 EC내의 특정 국가와의 협상에서 수입위스키와 국내제조 위스키의 세율수준과 과세방법을 놓고 팽팽히 대립된 입장은 매번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낳고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EC의 요구에 문제가 분명히 있으며 자신들도 논리적 설득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의 주세정책과 주세행정은 나름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있기에 EC의 요구를 떠나서도 우리자신이 스스로 주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볼 단계에 처해있다고 판단된다.

많은 경우 특히 외국인들과의 이해가 얽힌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경우 우리는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매우 농후하다. 물론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이고 국가이익을 쫓는 원칙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 이성적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가 항상 지배한다. 감정적 차원의 대응은 물론이고 이성적 차원의 대응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겠지만 감정적 차원의 대응은 百害無益함이 인식되어야 하겠다.

본고가 의도하는 바는 EC의 다소 터무니없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지만 차제에 우리나라 주세정책과 주세협정의 전반적 문제점을 간략히 서술해 보기로 한다.

II. EC의 요구

EC의 요구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EC 특히 영국이 주로 생산 판매하는 위스키의 세율이 너무 높으니 이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술에 대한 세금의 과세방식을 현행의 從價稅에서 從量稅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一見 타당한 것 같으나 논리적 정책적 관점에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주세세율의 수준과 과세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논의하겠지만 우선 EC 또는 특정 국가가 우리의 조세정책을 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정책을 특정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외국의 특정 국가나 EC와 같은 경제공동체가 특정 상품을 놓고 국제무역상 논쟁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당해 상품의 시장을 전혀 개방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같은 상품을 두고 국산과 외국산을 특별히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경우이다.

술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의 주세정책이 위의 두가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한 EC의 압력은 부당하다.

1984년의 맥주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시발로 하여 우리나라의 술시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개방되었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EC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다만 EC는 위스키시장의 확대를 위해 이에 대한 세율수준의 인하와 과세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Ⅲ. 주세부과의 근거

EC의 구체적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요구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대응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세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류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EC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기 전에 이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자.

酒稅가 부과되어야 하는 근거는 다음 세가지이

다. 酒類의 소비가 外部效果, 즉 外部不經濟를 초래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效率性의 관점에서 酒類에 稅金을 부과하면 價格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生産과 消費를 감소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禁止的 租稅(sumptuary)로서의 酒稅인데 이는 酒類의 소비가 건강상 및 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류의 소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需要가 非彈力的인 財貨나 用役에 과세를 하는 것이 資源配分の 歪曲을 적게 한다는 論理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酒稅政策 및 行政은 國庫財源調達이 주된 目的으로 酒類의 소비가 원칙적으로 사회에 혜택보다는 폐해를 더 많이 야기시킨다는 禁止稅(sumptuary tax)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酒稅法 자체의 制定이 日帝下인 190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 졌으며 정부수립후 1949년에 다시 制定·公表되었으나 日本의 酒稅法을 크게 모방한 것으로 아직까지 그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방자체가 나쁜것이 아니라 우리의 經濟與件의 계속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현행 酒稅法은 1976년에 시행된 이래 國民所得의 증대, 消費者 選好의 다양화, 産業構造의 고도화, 經濟의 개방화 등 경제여건의 상당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制度的 改善없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소비자의 需要를 충족시키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酒類製品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酒稅法과 酒稅行政이 이를 매우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의 制度하에서는 새로운 酒種의 개발, 品質의 개선, 工程技術의 혁신, 포장의 개선, 국제시장에의 진출등이 기대될 수 없으며 주류생산업체는 정부의 지시일변도에 따르는 로보트(robot)에 불과한 실정이다. 酒稅行政 및 稅法規定의 엄밀한 검

토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결론의 하나는 정부가 주류산업에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으며 市場原理가 발휘될 수 있는 경기규칙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Ⅳ. 주류소비의 특성과 국민경제적 효과

酒類의 소비 및 이에 대한 과세는 몇가지 社會的·經濟的 의미를 갖는다. 酒稅政策 및 酒稅行政은 國庫調達, 국민건강, 사회범죄, 산업의 발전, 식량정책, 농가소득, 고용창출, 국제수지등에 직접·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술은 생활필수품은 아니나 국민의 대표적인 기호품의 하나인데 그 소비량이 어느 소득수준까지는 계속 증대하며 기호의 변화에 따라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適正量까지는 술의 소비는 건강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과도한 음주는 국민건강을 해치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범죄등의 각종 社會的 費用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종교적·도덕적 측면에서 부정적 心理反應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주류소비의 증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어 주류산업의 발전을 억제 저해하는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주세는 제조·출고과정에 대한 집중적 관리로 세원의 포착이 용이할 뿐만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그 소비가 늘어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용이한 세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수확보만이 강조되어 생산·판매·소비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창의력 발휘와 기술혁신이 저해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제의 성장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류산업도 급속하게 성장 변화할 수밖에 없다. 주류산업의 성장 및 변화는 주류의 다양화, 여타 산업에 비한 주류산업의 상대적 비중 증대로 나타날 것이다.

주류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부가가치 기준이든 생산액 기준이든 2%내외인데 산업으로서의 주류제조업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과 소득의 창출에 기여하는 바 여타 산업에 비하여 그 비중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주정이 1백% 곡물을 원주로 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술의 생산 및 소비는 식량정책 및 농가소득정책과 관계가 있으며, 각종 주류원료 및 완제품 주류의 수입자유화는 국제수지 및 통상정책과 직접 관련된다.

결론적으로 무릇 모든 여타 경제정책 및 행정지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창의력의 최대한 발의로 주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국민경제에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류정책 및 주세행정도 전환·보완되어야 한다.

Ⅴ. 주세의 세율수준 및 세율구조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담세자·업체 그리고 정부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주세의 주된 과세는 주세의 전반적 세율수준을 어느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와 주류별로 어떠한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인가 이다.

EC의 위스키에 대한 세율인하 요구는 위스키에 대한 세율이 인하될 때 위스키의 소매가격이 인하됨으로써 위스키의 수요량(판매량)이 증대하고 동시에 소주나 여타 주류를 대체하는 효과 때문에 위스키의 판매량을 증대해 자신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입주류를 포함하여 술 전반에 대한 세율체계는 EC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체계로 유지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주세의 현행 세율체계는 酒種상호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술에 대한 세율이 전반적으로 보아 다른재화나 용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1988년에 일부 조정된 것을

제외하는 현재 시행중인 세율체계가 최종적으로 조정된것은 1974년으로 그간 우리의 소득수준이 크게 증대하고 생활안정과 소비자의 선호가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주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주세의 세율은 酒質의 차이·소비형태·소득수준 및 酒類의 가격체계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세수확보,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공정성, 그리고 주류산업의 균형된 발전등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소득계층간의 세부담 형평만을 고려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마시는 술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산층 이하가 마시는 술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위스키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소비되고 고급향락업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분명하나 중산층이하 소득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주류가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맥주는 아직도 영세저소득층에게는 고급주이나 상당수의 국민에게 이제 大衆酒가 되었으며 소주의 경우 서민이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의해서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량기준과 알콜도수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출고가와 대비될 때 가장 높은 간접세를 부담하는 것은 위스키를 제외하고는 맥주이다. 반대로 소주와 진의 상대적 세부담은 매우 낮다.

이상의 일반적 논의를 근거로 세율관련한 EC 요구의 타당성을 살펴보자

세율과 관련한 EC의 주장은 위스키에 대한 높은 세율의 적용이 외국산 술인 위스키와 국산인 여타의 술을 차별하여 과세한다는 것과 소주와 위스키가 같은 종류의 술 즉 증류주이기 때문에 세율을 같게 하거나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의 격차를 현재보다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두가지 내용 모두 자שה히 음미해보면 틀린 주장이다.

국산위스키가 수입된 원액을 주된 원료로 하여 생산되나 엄연히 국산술이므로 높은 세율에 의한

과세가 외국산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없다. 국내제조 위스키와 완성수입제품 위스키에 대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한 조세에 의한 차별화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화학적·구조학적 입장에서 소주와 위스키가 얼마나 동일한 술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완성된 제품의 측면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소비자에게 완전히 별개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율에 얼마만큼 차등을 두어 과세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酒質의 차이, 소비형태, 소득수준, 가격체계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세수확보,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공정성 그리고 주류산업의 균형된 발전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酒種間的 세율체계는 전적으로 당해국의 정책결정사항이므로 제3국이 관여할 성질의 사항이 아니다.

酒類에 대한 세율의 전반적인 수준이 세수확보라는 國庫目的에서 책정된다면 주류간에 적용될 차등세율구조는 알콜도수 소득계층간의 세부담형평 주류산업의 균형된 발전, 제반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히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VI. 종량세, 종가세 문제

일반적으로 세목을 과세등급에 따라 종가세(Advalorem tax)와 종량세(Unit tax)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이고, 후자는 과세물건의 용적이나 수량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다. 분석상에 있어서 종량세와 종가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종가세가 단위당 판매수입을 감소시키는데 반하여 종량세가 가변단위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주세수입의 소득 및 가격변동에 대한 반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R.A. Musgrave교수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의 주세는 종전의 종량세에서 1967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1967년 세계개혁을 통하여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되던 주세가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우리나라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는 모두가 증가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량세로 과세되는 유일한 예외는 전매청의 담배인삼공사로의 전환과정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수입담배 과세 협상과정에서 채택된 담배소비세에서의 종량세 방식 과세, 주세 중 주정, 그리고 특별소비세의 장소에 관한 것 중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설치장소에 대한 종량세 방식의 과세 뿐이다.

사실 EC가 요청하기 훨씬 이전에 국내의 주류업체도 술에 대한 과세방식을 증가세 방식보다 종량세 방식으로 하여 줄것을 계속 요청하여왔다. 그러나 EC와 국내 주류업체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내 주류업체는 증가세 방식이 포장 또는 용기의 고급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종량세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EC의 경우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됨으로 해서 수입위스키의 가격을 인하시키거나 인플레이의 진행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아보다 많은 판매량을 올리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세율의 변경이 자유롭다는 전제하에서는 종량세와 증가세의 선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량세는 생산물의 가격이 주어지면 이에 상응하는 증가세로 언제나 전환시킬 수 있다. 문제는 세율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종량세가 부과되면 생산자가 물량의 내용을 조정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을 비효율이 초래된다. 종량세는 인플레이의 진행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데도 단위당 세액이 변화하지 않아 세수의 구조적 신축성이 감소된다.

종량세로의 전환이유로 첫째, 주세가 포장이나 용기에까지 과세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과 둘째, 현행 국가세제하에서 용기를 포함한 포장을 고급화할 경우 이에도 주세가 적용되어 조그마한 용기개

량도 상당한 가격인상으로 나타나 기호품 제품의 용기고급화 내지 포장고급화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주세와 관련하여서는 콜롬비아·뉴질랜드·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등을 제외하고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종량세형태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량세보다 증가세가 장점이 많은데도 미국·일본·영국·서독·프랑스·싱가포르·홍콩 등의 나라에서 아직도 종량세 형태로 주세가 과세되는 것은 근세이전에 도입된 주세제도가 주류업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단위당 세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종량세제는 가격수준이 크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시에 실질세수의 감축을 초래하며 주류간의 상대가격이 변화함에도 종량세가 유지되는 경우 세부담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종량세제하에서 가격이 계속 변화할 때는 일정수준의 실질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계속 조정되어야 하는데 세율의 계속적 조정은 어느나라에서나 쉽지 않다.

높은 세율의 증가세제하에서는 용기의 개선이 큰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업자 또는 일부 식자들은 증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거나 증가세로 유지하되 포장용기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다른 거의 모든나라에서 주세가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종량세형태로의 과세방법 전환이 제안되나 증가세가 갖는 이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종량세로의 전환은 어려우며 바람직하지 않다. 포장용기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내용물만 출고가격에 따라 증가세형태로 과세할 경우 과세가격산출에 혼란을 야기시키며 집행상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술을 마시는 소비자는 술을 살때 술과 이를 담고 있는 용기를 동시에 수입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개선비를 훨씬 상회하는 판매가격인상 때문에 포장용기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화장품의 경우도 화장품

을 담고 있는 용기가 판매가격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다. 술 그리고 화장품 모두 소비자는 내용과 용기를 동시에 구입·소비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높은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순수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두가지 방법 중 어느것을 택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같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특정 방법의 선택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현실에서는 생산자의 판매수입, 정부의 국고수입, 포장의 고급화, 상대가격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도 있다.

문제는 EC와 같은 제3국이 특정 과세방법을 강요할 수 있느냐하는 데 있다. 국산술에 대하여 종량세로 과세하고 수입술에 대하여 종가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이 종가세 과세방식을 종량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해 줄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가 모두 종가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술에 대해서만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할 것을 EC가 요구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술에 대한 과세가 종량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종량세 형태로 주세가 과세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론적 타당성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근세이전에 도입된 주세제도가 이들 나라에서 주류업계의 강력한 저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술에 대한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EC 협상당사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하나의 질문은 우리나라가 EC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현재의 종가세 방식을 포기하고 종량세방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고가품 수입 위스키에 대해서 종가세 형태로 세

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내업체로는 가격경쟁력의 확보에 유리하고 해외의 수출업자는 가격경쟁력의 확보에 불리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EC와 우리나라 간에 세금부과 방식을 놓고 크게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대립이 문제의 본질이기에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지 EC가 논리적으로 옳은 주장을 하고 있지않음은 분명하다.

VII. 酒稅減免의 축소

특정한 경우에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1. 수출하는것.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것. 5.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써 직접수입 하는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가 자용품으로 직접수입 하는것 6. 외국선원 휴식소에 납품하는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것 등은 면제된다.

주세법과는 별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여자에게 판매되는 국내제조주류에 대하여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관, 관광, 수출과 관련한 주세의 면세는 국제관례상 수용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군인 및 군무원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가 면세가 되는것은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음주가 국민보건상 해로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산업재해·범죄등 각종 사회비용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음주가 신성한 국방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의 주세면세자는 특혜제도를 통하여 장려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술이 기호품인 이상 군인 및 군무원도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마실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는 다른 특혜가 주어지면서까지 술의 소비를 권장할 수는 없다.

군인 및 군무원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세가 이들의 봉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간접적인 생계지원의 방안으로 주세면세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기업종사자 또는 여타 공무원에 비해 군인 및 군무원의 봉급수준이 낮아 생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지원이 여타 물품에 대한 면세 또는 봉급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이루어져야지 주류소비에 대한 면세제도도 썩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VIII. 酒類의 價格自律化

주류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 관리되고 있는바 가격통제는 조세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나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주류산업이 관제하의 특수한 산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격통제가 먼저 해제되어야 한다. 주류에 대한 가격정책과 조세정책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까닭은 주류와 여타 재화간 그리고 유종 상호간에 상대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주세의 적정세율책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격결정체제는 소비자의 선호를 무시하고 개별기업의 창의성 발휘를 저해하여 자유경쟁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크게 저하하며 통제가격은 유통질서의 문란을 초래한다. 제조원가의 산정과정에

서 포장비의 원가산입이 허용되지 않아 지난 3~40년동안 포장용기가 초라한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은 단순한 업계의 불평으로 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있다.

소주등 특정 주류의 경우 유통가격이 국내 어디서나 획일적인 것은 그리고 제조자의 상표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것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IX. 맺음말

EC나 여타국으로부터 우리의 정말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지는 이야기는 아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하지만 자기중심적 논리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자제하여야 옳다. 특히 자국내에서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내세워 술과 담배의 소비억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을 소비하도록 권장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정책이다.

EC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나 우리의 주세정책과 주세행정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특히 몇몇 특정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여론아닌 여론에 밀려 주세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조세수입, 소비자의 선호, 생산자간의 경쟁질서 확립 등의 관계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정확히 인식하여 술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정립하여 꾸준히 그리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